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2
------	-----

제출년월일 : 1996.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개정사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준용되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1995.12.30., 대통령령 제14,877호)의 개정 및 국내여비 규정의 개정(1995.12.29., 대통령령 제14,857호)과 국외여비규정의 개정(1995. 6.10., 대통령령 제14,662호)으로 위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기준액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함.

□ 주요골자

- 회의 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편도거리 60킬로미터 이상)에 거주하는 위원이 회기중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는 경우 원격지 회의출석비를 회의수당에 포함하여 지급토록 함.
- 회기중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토록 함.
-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의 국내·외 출장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숙박비 및 식비의 지급액을 상향조정하여 현실화 함.

□ 근거법령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별표 5」
- 국내여비규정 「별표 2」
- 국외여비규정 「별표 2」

□ 조 례 안 : 덧붙임

□ 참 고 사 항 : 덧붙임

○ 신·구 조문 대비표

○ 관계법령 발췌서

○ 충청북도의회 부의안건 공고문 사본

○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심의·의결 공문서 사본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회의수당 지급)중 “회의수당을”을 “회의수당(원격지회의출석비를 포함한다)을”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한다.

제7조(회의수당 지급기준)중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원격지회의출석비는 회의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위원회사무실 소재지로부터 편도거리 60킬로미터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위원이 회기중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되, 별표 1 “국내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한 교통운임(현지교통비를 제외한다)·숙박비 및 식비(3분의 1)를 지급한다.

③제2항의 원격지회의출석비 지급대상지역은 별표3과 같다.

[별표 1] 국내여비지급기준표중 숙박비 및 식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단위 : 원)

구 분	숙 박 비 (1 야 당)	식 비 (1 일 당)
의장 · 부의장	37,500	25,000
위 원	37,500	25,000

[별표 2] 국외여비지급기준표중 숙박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단위: 미불화)

구 분	숙 박 비 (1야당)
의 장 · 부 의 장	가 등 급 169
	나 등 급 123
	다 등 급 97
	라 등 급 83

구 분	숙 박 비 (1야당)
위 원	가 등 급 137 나 등 급 99 다 등 급 76 라 등 급 65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